

병해충종합관리 개발·촉진 위한 관련자 선도적 역할해야

각국 정부 결집노력 보이고 여성단체 등 참여위해 과학적 기초 돼야
농약산업계, 인정절차·시험방법 따라 적정·효과적 시험되도록 해야

- 기술부 -

엄격히 제한된 농약(Severely restricted pesticide) 엄격히 제한된 농약은 어떤 특정한 경우 사용이 허용되고 있지만 인간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종 규제조치로 실질적 모든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농약을 의미한다. 이 농약에는 인간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가 명백할 경우 실질적으로 모든 사용이 국내시장 또는 국내 승인과정에서 재검토를 위해 승인이 거절되었거나 산업계가 자진취하한 농약을 포함한다.

구매공고(Tender) 구매공고는 농약 구매시의 조건 의뢰를 의미한다.

독성(Toxicity) 독성은 기계적 수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생물에게 해를 입히거나 손상을 끼치는 화학물질의 능력을 결정하는 생리적 또는 생물학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무역업자(Trader) 무역업자는 수·출입, 국내 유통을 포함하여 무역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사용방법(Use pattern) 사용방법은 살포량, 처리시기, 수확전 처리간격을 결정하는 사용을 위한 조제시의 유효성분 농도, 살포율, 살포시기, 살포횟수, 보조제 사용, 살포 방법 및 살포대상을 포함하는 농약사용에 관련된 모든 요인의 조합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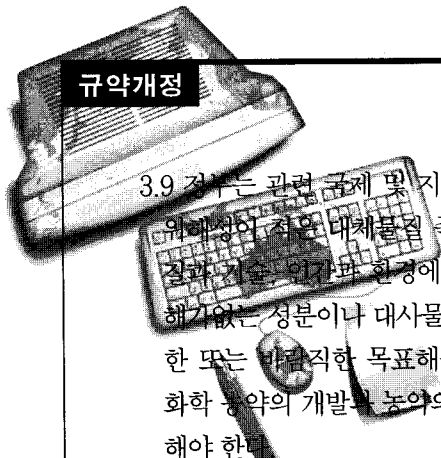
제3조 농약관리

3.1 정부는 자국의 각종 농약의 유통 및 사용의 규제에 대해서 전체적 책임을 지며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2).

3.2 농약산업계는 농약의 제조·판매 및 광고의 기준으로 본 규약의 각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

- 다. 특히 해당 법규 및 지도기관이 부족한 국가에서 엄정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
- 3.3 농약수출국 정부는 가능한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 3.3.1 다른 나라 특히 기술적 전문지식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 농약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농약관련자료 평가에 관한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3.3.2 농약을 수출할 때 특히 농약규제 조치가 없거나 또는 한정적 규제조치 밖에 없는 나라에 수출할 경우에는 최적의 상거래 기준을 따르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3.4 농약 산업계와 유통업자, 특히 관계법규가 없거나 단속규칙을 시행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서는 다음의 농약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3.4.1 각각의 특정 시장에 대해 적합한 적정 품질, 포장 및 라벨을 한 농약만을 공급해야 한다(3);
- 3.4.2 농약 조달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농약 구매공고 절차에 대한 유엔식량농업기구 지침의 조건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4);
- 3.4.3 사용자에 대한 위해 감소와 환경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제형의 선택, 표시, 포장 및 라벨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3.4.4 취급시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위해성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형태와 언어로 정보와 주의사항을 농약의 각 포장에 제공하여야 한다;
- 3.4.5 필요하다면 농약 폐기와 사용한 농약 용기에 대한 충고를 포함하여 완전한 제품의 책임관리에 의해 뒷받침된 효과적인 기술 지원을 재포장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3.4.6 최종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사제품의 주요 용도를 추적하고 라벨링, 사용방법, 포장, 제조방법 또는 제품이용성의 변경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초로서 자사제품의 사용에서 야기하는 문제의 발생을 조사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 3.5 조작 또는 살포에 불편하고 고가이거나 쉽게 구할 수 없는 개인 보호장비를 필요로 하는 농약은 피해야 한다. 특히 열대지방의 소규모 사용자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저렴한 개인 보호장비 및 살포장비를 필요로 하는 농약과 농약이 사용되는 조건에 맞는 절차에 그 선호도를 두어야 한다(5).
- 3.6 국가 및 국제기구, 정부 및 농약업계는 농약 사용자, 농가, 농업인 단체, 농업노동자, 농업노동자조합 및 기타 관련 단체에 모든 형태의 교육자료 배포를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농약사용자들은 농약을 사용하기에 앞서 교육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 3.7 각국 정부는 병해충종합관리를 개발, 촉진하기 위해 결집된 노력을 보여야 한다. 또한 원조기관, 기증기관과 정부는 국가 병해충종합관리 정책 개발과 병해충종합관리개념 및 실천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여성단체를 포함하는 농민들, 현장농업 지도기관, 농업연구자들의 확대참여를 촉진할 과학적 및 기타 전략에 기초되어야 한다.
- 3.8 농부, 농업인 단체, 병해충종합관리 연구자, 현장 농업지도기관, 작물 컨설턴트, 식품산업계, 생화학, 화학 농약 및 살포장비 제조자, 환경 및 소비자 대표 단체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은 병해충종합관리의 개발과 촉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3.9 정부는 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의 지원으로 위해성이 낮은 대체물질 즉, 생물학적 제어물질을 개발하고, 이러한 환경에 저독성이며 사용후 해가 없는 성분이나 대사물질로 분해되는 가능한 또는 비특정적인 목표해충에만 작용하는 비화학 농약의 개발과 농약의 연구를 장려, 도모해야 한다.

3.10 정부와 살포장비업체는 인간과 환경에 위해성이 낮고 보다 효과적이고 가격이 저렴한 농약살포 방법과 장비를 개발하고 도모해야 하며 이런 활동으로 실제훈련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6,7,8,9, 10,11,12).

3.11 정부, 농약산업계와 국내 및 국제기구들은 가치 있는 농약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농약의 병해충 저항성 발현에 기인한 부작용 감소를 위해 저항성 관리 전략을 개발하고 촉진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제4조 농약의 시험

4.1 농약산업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4.1.1 각 농약 및 농약제품은 사용 지역 또는 국가에서 예상되는 각종 조건과 관련하여 약효, 동태, 행적 그리고 위해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인정된 절차와 시험방법에 따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시험되도록 해야 한다(13,14);

4.1.2 이와 같은 시험은 올바른 과학적 절차와 최적시험기준(GLP)에 따라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15);

4.1.3 판매용으로 농약이 제공되는 모든 국가에서 책임행정관청의 평가에 필요한 시험보고서 원본의 이용가능한 복사본 또는 요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의 평가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서 수

행되어야 한다. 만약 번역본이 제공될 경우 그 정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1.4 제안된 사용방법, 라벨 기재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포장, 기술안내서 및 광고는 과학적 시험 및 평가결과를 진실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4.1.5 특정국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조하는 유효성분이나 제제의 분석방법과 필요한 분석 표준품을 제공해야 한다;

4.1.6 관련 분석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직원의 훈련에 필요한 자문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조업자는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

4.1.7 시판에 앞서, 적어도 적절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코덱스 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과 최적분석기준 및 작물 잔류 자료에 대한 유엔식량농업기구 지침에 따라서 잔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17,18,19,20).

4.2 각국은 필요시 유엔식량농업기구 또는 세계보건기구의 규격명세서(specifications)에 따라 시판 또는 수출용 농약의 품질을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고 제제의 유효성분 및 기타성분의 함량과 적합성 설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21,22,23).

4.3 국제기관 및 기타 관련단체는 농약수입국(국가 또는 지역)내 분석실험실의 설립 또는 기존 실험실의 보강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자원내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 실험실은 최적분석기준을 위한 엄격한 과학적 절차와 지침에 충실해야 하며 필요한 전문가를 보유해야 한다. 또 적정 잔류분석장비와 공인된 분석표준품, 용제, 시약, 최신 분석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4.4 수출국 정부 및 국제기관은 시험계획 수립과 수행, 잔류자료의 해석 및 평가, 위해성/유익성 평가에 관한 전문가를 훈련하는 데 있어 개발도상국의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4.5 농약 산업계와 정부는 재배포장 조건에서 농약의 행적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등록후의 정기조사 또는 모니터링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14,24).

제5조 건강과 환경 위해성의 경감

5.1 정부는 다음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5.1.1 제6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농약 등록 및 관리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5.1.2 자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약과 그 허용가능한 용도와 공공의 각 분야에 대한 이용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과학적 증거에 의해 지적되었을 때 특별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5.1.3 직업적으로 농약에 노출된 사람들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하며 관련문서는 물론 중독사례를 조사해야 한다;

5.1.4 보건소 직원, 의사, 및 병원 직원에 대하여 의심되는 농약중독의 처리 지침과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25);

5.1.5 응급처치와 의료 처치에 대한 긴급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이용 가능한 적절한 장소에 국가 또는 지역 중독정보 및 관리센터를 설립하여야 한다(25);

5.1.6 농약에 대한 건강 문제와 농약중독사고에 대한 신뢰할만한 자료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통계 작성을 위해 이와 같은 자료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세계보건기구의 조화된 체계 설립 목적에 따라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 보장을 위해 적절히 훈련된 인력과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25);

5.1.7 현장 농업지도기관 또는 지문기구와 농업인 단체에 사용가능한 농약제품의 범위 뿐만아니라 실천 가능한 병해충종합관리 전략과 방법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1.8 농약산업계와 협력하여 농약이 식품, 의류, 의약품, 기타소비재 또는 국소처리제(topical application)를 취급하는 상점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이들 제품들은 오염이나 오인을 방지하도록 타 상품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위험물 표시를 명확히 해야한다. 농약과 식품을 같이 보관하는 위험성을 알리는데 모든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26);

5.1.9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환경오염에 관한 자료를 계속 유지하며 농약과 관련된 특정사고를 보고하는데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5.1.10 식품과 환경의 잔류 농약을 검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5.2 농약관리제도가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도 농약산업계는 다음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5.2.1 판매되는 농약의 주기적인 재평가에 협조해야 한다;

5.2.2 중독 관리 센터와 의료관계자에게 농약의 위험성과 농약중독의 적절한 처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2.3 농약에 의한 위해성을 줄일 있는 다음의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5.2.3.1 이용가능한 저독성 제제를 제조한다;

5.2.3.2 즉석 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한다; **농약정보**